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68p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	개념,공식-설명	**수정 전**	한편 앞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2/3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한다.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< 실제 발생한 손해액(지급한 손해배상금 × $\frac{1}{3}$) : 손금항목 / 지급한 손해배상금 × $\frac{2}{3}$: **손금불산입항목**
		수정 후	한편 위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.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= A × $\frac{B-1}{B}$ • A : 지급한 손해배상금 • B : 실제 발생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배수 상한
		수정사유	2024년 2월 29일 개정사항 미반영
660p 자녀세액공제	개념,공식-설명	**수정 전**	※ 만 8세 이상부터 적용 ※ 주의) 다자녀 추가공제는 직계비속 중 자녀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므로, 손자나 손녀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.
		수정 후	※ 8세 이상부터 적용
		수정사유	손자녀 공제 관련 문구 삭제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